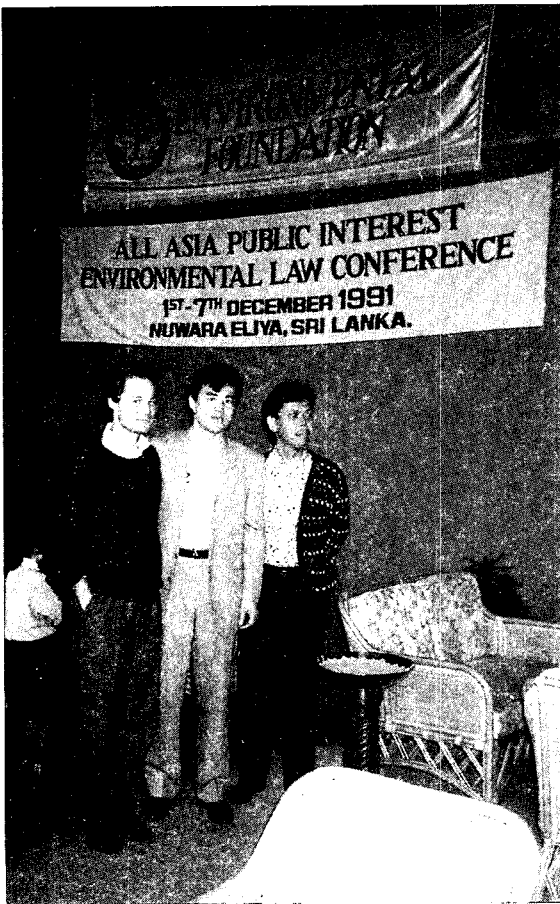


공익환경법의 역할에 대한 전망

-제 1 회 아시아지역 공익환경법회의의 참가기-



이 상 돈 / 중앙대 법대 교수

1. 환경보호운동과 법률가의 역할

오늘날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및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 드높다. 그리고 이제 각국은 강력한 환경보호정책과 입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는 국제적 과제가 되어서 이제 냉전의 종식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이은 國際環境秩序의 정립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환경보호에 관한 높은 인식을 가져온 데는 여러가지가 기여를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民間環境保護運動과 科學의 發見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촉발시킨 데에 환경보호운동의 역할이 중요하였나 또는 과학적 발견이 보다 크게 기여하였나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두가지가 모두 함께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정은 유사하다고 하겠다. 환경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학자들이야 말로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이 이 정도로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한 장본인 일

것이며 또한 각계의 환경보호운동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환경보호운동과 관련하여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法學과 法律家의 역할이다.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규제와 시민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학의 역할은 다대하다. 실제로 많은 환경사건은 법적 訴訟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진해만 오염 사건이나 상봉동 연탄분진 사건 등 상당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오염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많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매년 작성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도 한건의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 환경법을 전공하였다고 하는 필자로서도 이는 얼굴을 들 수 없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우선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상당수의 환경관련 소송은 모두가 민사소송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우리의 법률가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개발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무리가 아닌가 한다. 이점은 미국의 많은 환경소송이 개발에 대항하여 싸운 公共的 訴訟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크게 비교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운동이 주로 피해가 발생한 후의 被害 告發과 被害者救濟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소송과 같은 법적 장치에 호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신뢰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가들과 遊離되어 있지 않나 한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변호사 수가 무척 적기 때문에(현재 개업변호사는 약 2500명 정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가져오는 업무에 전념하게 되며 따라서 환경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法的 裝置를 통한 환경보호운동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公益 環境法(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law)은 성장하지 못하였다.(필자만 하더라도 그간 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정책과 관련된 환경법(policy-oriented environmental law) 분야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경보호운동은 외관상 완전한 합법성으로 무장된 개발에 무력하여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운동은 항상 개발이 확정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에 있으며 그나마 여론의 주목이 흐려지면 그대로 무력해 지고 마는 것이다. 한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잼버리 대회장 문제나 골프장 건설도 모두 이런 식으로 一過性 에피소드로 끝나 버린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민간환경보호운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데는 공익환경법이 발달하지 못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제 1 회 아시아 지역 공익환경법회의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스리랑카의 중부고산의 누아라엘리아(Nuwara Eliya)라는 작은 마을의 한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법률가 30여명이 참가한 아시아 지역 公益環境法會議(All Asia Public Environmental Law Conference)가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사실상 워싱턴과 같은 것이었는데 각국의 환경법률가들의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또한 각국의 경험을 교환하며 떠나가서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워싱턴은 미국의 아시아 재단이 후원한 것인데 동 재단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스리랑카의 공익환경법단체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중에 느끼게 된 것이지만 이 회의는 이미 자력으로는 빈곤과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어려운 남쪽 나라들의 환경법률가들과의 유대강화도 의도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하튼 필자로서는 이른바 제3세계의 환경문제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으며 각국의 환경법률가의 활동도 알게된 소중한 기회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다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적절한 참석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30대의 변호사이었는데 교수로는 미국 오레곤대학의 존 보나인 교수와 일본 요코하마 대학의 가쓰오 수미 교수,

그리고 필자 뿐이었다. 존 보나인 교수야 말로 실로 이 모임의 발상자이었는데 그는 “범세계적인 환경법연합”(“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 즉 “ELAW”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말하자면 이러한 네트워크의 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회의가 스리랑카의 내륙 해발 1800미터의 산골에서 열린 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우선 매우 심각한 제3세계의 환경문제를 논하기 위하여는 동경이나 뉴욕의 최고급호텔 보다는 누아라엘리아의 허름한 호텔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무엇보다 스리랑카는 빈곤국이지만 아열대에서 고산의 온대에 이르는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나 빈곤과 정책부재로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게다가 스리랑카는 민간공익환경법률단체(흔히 영어로 Law NGO라고 부른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동남아시아의 민간공익환경법률단체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3. 동남아 지역의 민간공익환경법률단체

민간환경보호단체로서 유명한 것을 들자면 화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그린피스(Green Peace)와 미국의 World Wildlife Fund/The Conservation Foundation과 Sierra Club, 그리고 영국의 National Trust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분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의 Natural Resource Defence Council과 Environmental Law Institute, 영국과 미국에 동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근에 설립된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정책연구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World Wildlife Fund/The Conservation Foundation은 미국정부의 환경정책연구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환경보호처장인 William K. Reilly는 이 단체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부금과 자체의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한다면 동남아의 공익환경법률단체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으나 그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의 Environmental Foundation, 필리핀의 Philippine Ecological Network과 Haribon Foundation,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WALHI)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의 Environmental Foundation은 10년전에 콜롬보 대학의 몇몇 법과대학생들이 만든 단체인데 최근에 아시아 재단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서 자체의 건물을 갖게 되었으며 4명의 변호사와 3명의 환경과학자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의 대표는 30대초의 Lalanath de Silva이며 시민들의 공해문제 상담은 물론이고 현지 조사와 소송대행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필리핀의 Philippine Ecological Network은 Antonio Oposa가 대표인데 Antonio Oposa는 얼마전에 필리핀의 아이들을 대표하여서 목재회사의 삼림벌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필리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보호주의자 변호사인데 이번 모임에는 오지 못하였다.(필자는 그를 91년 2월 홍콩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다.) Haribon Foundation은 자연보호단체인데 그중 법률부에 변호사가 5명이 있다고 하며 이번 모임에는 그중의 2명이 참석하였다. 두 단체 모두 미국과 화란의 재단의 경제적 원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WALHI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법률구조단체인데 그중 환경보호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 대표는 Abdul Hakim Nusantara인데 91년 4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바 있는데 필자가 속한 韓國環境法學會는 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WALHI도 역시 미국과 서구국가의 민간재단의 경제적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수하르트 정권의 독재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이기도 하다. WALHI에도 4명의 환경변호사가 고용되어 있다고 하며 이번 회의에는 Abdul Hakim은 오지 못하였고 차석인 Achmas Santosa가 참석하였다.

현재 민간 환경법률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이 세나라인데 필자가 보기에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첫째로, 세나라가 모두 빈곤하고 열대지역에 위치하여 森林伐採라는 공동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리랑카에 체류중 필자는 아름드리의 통나무가 실린 트럭이 매연을 뿜으면서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열대우림을 벌채하고 대신 국외시장에 팔기 위한 換金作物(cash crop)인 차와 코코넛을 심었다가 토양이 유실되어서 헐벗은 산도 볼 수 있었다. 사실 필리핀에 요즈음 자주 발생하는 엄청난 태풍피해는 熱帶雨林을 벌채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경제파탄으로 이렇다 할 산업이 없으니 나무를 벌채하여 수출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은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될 정도인 것이다. 둘째는 세나라의 정부가 무능하고 또한 부패하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정부는 과거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침체에다 북부의 타밀족과 내란이 겹친 상태이고 게다가 강물도 없는 곳에 대형댐을 건설할 정도로 무능하니 환경보호행정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필리핀 정부도 역시 무능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하르토의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 최근에는 외국기업유치에 열심인데 대개 공해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이들 국가에는 아직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및 환경법 그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하수의 처리나 산업공해의 규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비하며 지하철과 같은 현대적 대중교통수단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일제중고차를 수입하여 교통수단을 삼고 있을 정도이다. 넷째로 이들 국가에는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하여 변호사의 숫자가 많으며 또한 변호사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의 재단의 원조에 힘입어 운영되는 이들 단체가 몇 명의 전임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단체의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우수한 젊은이들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자체로서 황금방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분야에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단체는 환경문제를 하나의 인권 상황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부재 속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의 편에서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비친 스리랑카는 환경문제 보다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수도와 전기와 같은 최소한도의 사회간접시설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으며, 실제로 모든 환경문제는 우선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 회의에서 토의된 사안들

7일 중 호튼 국립공원으로 하이킹을 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여러가지 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자국의 문제와 경험을 교환하였다. 주요 의제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 **환경문제와 인권**: 후진국의 환경파괴는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시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및 인도의 법률가에 팽배하여 있었다. 삼림파괴와 이로 인한 지역의 주민의 삶의 터전의 상실은 생존의 문제라는 입장은 많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였

다. 더구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정부 지배층과 결탁되어서 가난한 지역 주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환경도 파괴한다는 주장이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제기되었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모든 하천과 모든 도시의 공기가 극심하게 오염되어서 빈곤한 서민층은 식수가 도대체 문제라고 하였다.

*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인도의 변호사가 오염배출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操業停止 판결을 얻어낸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사안은 몇몇 공장으로 부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이 너무 극심해서 주민들이 쓰러질 상황까지 간 상황이었다 한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자진하여 어려운 소송을 제기하여 잠정적인 조업정지 판결을 얻어 낸 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도는 도대체 環境行政當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의 영향으로 인하여 법원과 변호사들의 공공적 역할은 강한 것으로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한다.

* **헌법 및 행정법적 문제**: 주로 거론된 것은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행정절차법, 그리고 環境影響評價制度이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왔으나 주민 참여 제도인 公聽會는 이제야 시작되었으며 또한 정보 공개와 행정절차법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두가지 제도가 빨리 완비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음이 이런 자리에서도 절실히 느껴졌다.

* **경제적 동기를 이용한 환경정책**: 맥콤 볼드윈이란 미국변호사가 排出權 販賣制度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제적 동기와 법적 규제 등의 복합적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배출권 판매(emission trading)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탓인지 많은 질문이 있었다.

*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후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辯論의 場이 되어 버렸으며, 후진국의 민간단체의 참가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보고서 제출을 두고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극심한 마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 **공익법률가의 직업윤리문제**: 일반 개업을 하면서 공익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겪는 윤리문제가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위에 든 세나라의 공익법률가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은 자신의 개인 개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 **공익환경소송에서의 과학적 입증의 문제**: 공익소송에

서의 큰 문제는 사건에 관한 입증을 할 과학자의 조력을 얻는 문제인바 이에 관한 실제의 스리랑카의 예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논의의 주된 흐름은 남북문제도 느껴졌다. 특히 일본의 가쓰오 수미 교수는 일본의 개발 원조(ODA)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어서 受惠國의 국민과는 무관하게 단지 爲政者만을 위하여 봉사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국제적인 여론을 통하여만 막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각국의 민간법률가 사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수미 교수는 “ODA, 성공인가 실패인가”라는 베스트 셀러 책을 저술하여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는 기피인물이 될 정도이다.

5. 우리나라의 환경법률가의 역할

회의의 주제가 주로 개도국과 후진국의 문제가 되고 보니 우리나라와는 별로 무관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험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이미 선진산업국가의 유형에 가까운 편이라 다른 개도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로서도 예상외로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내의 H기업이 솔로문군도에 행한 벌목행위에 대한 호주의 민간환경단체의 관심과 비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계 제지공장을 인수한 S기업의 환경행태에 대한 인도네시아 단체의 관심이 그러한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 투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수미 교수는 한국기업들이 당장의 收支打算에만 신경을 쓰고 현지 지역의 환경 등 공공복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러한 상태로 가면 한국기업들이 주민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국의 민간환경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현지답사하여 국내에서 주의를 조기에 환기시켜야만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필자에게 조언하였다. 인도네시아의 Santosa 변호사는 현재의 수하르토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필자한테 인도네시아에 꼭 한번 와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당부하였다.

6. 스리랑카의 돌산 발파사건

무엇보다 필자를 당혹하게 하였던 것은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한국의 K건설회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

건은 스리랑카의 환경단체가 직접조사한 사건이었고 인도의 보팔사건과 같은 차원에서 多國企業의 윤리문제도 회의도중에 거론되어서 필자를 무척 당혹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안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수도 콜롬보 북쪽으로 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우리나라의 K건설회사가 수주하였다. K건설회사는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중이었는데 콜롬보 북쪽 약 150Km 되는 곳에서 발파작업 중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K회사 측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의 발파 작업시에도 주민에게 보상을 하기로 타결을 지었는데 그중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기에 대한 피해배상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적다는 것이 이 사건을 조사한 스리랑카의 환경단체의 주장이었다. 특히 한국 같으면 그러한 발파작업이 가능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제기되었으며 마치 보팔 사건에서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가 본국의 공장에는 설치한 안전장치를 인도에서는 설치하지 않아서 대참사를 초래한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우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단지 스리랑카 정부가 일단 엄격한 규제행정을 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콜롬보로 온 후에 알아 보았더니 사고 지점까지는 길이 안좋아서 네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여 현장답사는 포기하였고 그 대신 K회사의 지사장을 만나 보았다. 우선 그 지사장은 그 사건이 이렇게 논의된 데에 놀라와 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 그 공사는 스리랑카 정부의 공공공사로서 설계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돌산을 폭발할 때 그 돌산의 성질을 잘못 판단하여 예상외로 소리와 진동이 컸으며 돌덩어리가 멀리 날라 가서 인근 주민들의 주택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며 이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음은 K회사측도 인정하였다. 사실 스리랑카의 시골의 집이라는 것은 야자나무뭉칠과 나무 판자로 엮어 놓은 것이 태반이라서 폭발 진동이나 돌 파편에 의하여 집이 무너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K회사측은 피해배상을 하고 주민들과 합의하여 앞으로의 발파 때마다 얼마간의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단지 콜롬보 대학의 한 교수가 이 지점에 꽤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배상을 요구하여 해결을 못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극히 가난한 주민들이 보상에 동의하였는

데도 스리랑카의 환경단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발파작업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또한 보상금이 국제적 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 없이 적다는 데에 비롯되는 것 같다. 하지만 도대체 스리랑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보상을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이니 이상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필자가 느낀 바는 여러가지이다. 첫째로, 우선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착암기를 사용하지 섯불리 발파를 하지는 않으므로 역시 다국기업을 윤리문제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업기준의 설정은 현지국가의 책임이지만 다국기업의 행동규범은 이 경우도 본국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착암기를 쓰면 공사단가가 훨씬 상승함은 물론이니 발주처인 스리랑카 정부나 자금공여자인 세계은행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즉, 이같은 관계자의 공통된 관심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피해배상도 마찬가지로의 쟁점을 제기한다. 스리랑카의 단순노동자의 하루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내지 900원 정도이고 주택 피해라 해도 별 것이 아니므로 피해배상액은 국제적(또는 본국인 한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째로 지적할 것은 K회사가 다소간의 사려깊음과 현지 국민에 대한 이해심을 가졌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K회사는 스리랑카의 환경단체, 즉, Environmental Foundation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필자가 소개를 해주고 그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한 합리적인 법률가들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현지의 우리 대사관의 김 서기관과는 전화 통화만을 하였는데 역시 이 사건이 국제학술워크숍에서 논의되었다는 데에 놀라와 하였으며 또한 Environmental Foundation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7. 맺는 말

아시아 지역의 많은 환경법률가들과 지난 1주일은 필자에게 소중한 체험이었으며 특히 남쪽 나라의 환경문제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적인 공익환경법 운동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느끼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동남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한국은 한마디로 경이적인 나라이다.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하여 1인당 GNP가 6000불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콜롬보 시내에는 일제 중고차 사이에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와 엑셀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었으며 금성사의 텔레비전과 오디오가 최고급 상점에 진열되어 있었다. 빈곤과 환경파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후진국의 처지에 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문제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할 것은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해산업을 수출한 전례를 우리가 동남아 국가에 다시 이용하려는 것은 중대한 오해라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국민들의 환경인식도 이미 상당히 때문이다.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우리의 기업들은 이제 현지민과의 관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변호사가 필자에게 한 말은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새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법률가의 인적 자원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질을 가진 우수한 법률가들이 이러한 공익적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